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422
--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10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3월 2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26일
3. 상정일자

-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(2018년 4월 10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병익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교육부가 2018년 총액인건비 예비통보 대비 확정통보에서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
-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

: 증 6명(6,753명 → 6,759명)

○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

: 증 6명(485명 → 491명)

나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○ 총계 증원: 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
- 일반직 정원 증원: 증 6명 (6,755명 → 6,761명)

· 4·5급: 증 1명 (6명 → 7명)

· 5급 이하 소계: 증 5명 (6,674명 → 6,679명)

- 특정직 정원 증원: 증 6명 (485명 → 491명)

·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

: 증 6명 (435명 → 441명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22호로 제출되어 2018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8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따라 일반직·특정직공무원의 기준인원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정원 조례개정 경과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교육부가 통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'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'을 기준으로¹⁾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6809호)를 개정하여 기존 6,648명에서 6,753명으로, 특정직을 460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의 7,113명보다 130명 증가한 7,243명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「2018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」를(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-1194, 2018.2.27) 시달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가 기존 예비통보와 달리 각 4억 2천 1백만원(4,767억 1천 8백만원)과 6억 4천 4백만원(517억 2천 9백만원)이 증액 되어 기존의 예비산정 기준인원보다 일반직과 특정직 각 6명씩 총 12명을 기준인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나.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

-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7,243명에서 12명 증원된 7,255명으로 하되 일반직의 경우 기존 6,755명에서 4·5급 복수직을 1명, 5급 이하 일반직을 5명 증원하여 6,761명으로 하였고, 특정직은 기존 485명에서 491명으로 하였습니다.
- 이 중 일반직인 4·5급 복수직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개정에서 노사협력담당관(4급)의 설치로 복수직 1명을 감원하였던 것으로(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) 최근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

1)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5428, 2017.10.20.

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이 개정되어²⁾ 4급 이하 정원 책정에 있어 각 시·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7명으로 기준인원을 복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특정직의 경우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을 기준인원 482명 보다 9명이 많은 491명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예비산정 기준인원 476명 보다 6명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생략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2) 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113” 을 “7,243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648” 을 “6,753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460” 을 “485” 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 계	7,243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6,755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6,674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485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35				

<비고>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,113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<u>6,648명</u> 3. 교육전문직원 정원 <u>460명</u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7,243</u> 명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3. ----- <u>485명</u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%;">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시의회 사무처</th> <th style="width: 5%;">본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교육 지원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,113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교육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,650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·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·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113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	3·4급	3		3			4급	39		28	11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%;">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시의회 사무처</th> <th style="width: 5%;">본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교육 지원청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,243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교육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,755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·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·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243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755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	3·4급	3		3			4급	39		28	11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11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3	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39		28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24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75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3	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39		28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4·5급	6		6			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<u>6,569</u>					5급 이하 소계	<u>6,674</u>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	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	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<u>460</u>					특정직 계	<u>485</u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410</u>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435</u>				
<p><비고> 제2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</p>						<p><비고> (현행과 같음)</p>					